

EU 6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리스테리아균 리콜 조치

- 출처 : 유럽식품안전청(03.07.2018), <https://www.efsa.europa.eu/de/press/news/180607>
-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및 영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냉동 옥수수 및 기타 야채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생함
- 2018년 6월 8일까지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한 사망 사건9건을 포함하여 총 47건의 발병사건이 보고됨
- 특히 헝가리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된 냉동야채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척 및 소독 후에도 균주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됨
- 헝가리 식품안전협회(Food Safety Chain Bureau)에서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냉동 야채 및 채소식품의 출시를 금지시키고 유통 중인 식품을 회수함
- 유통기한이 최대 70일인 냉동 옥수수제품의 특성 상 리콜 리스테리아균을 보균하는 제품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샐러드, 스무디와 같은 제품은 특히 리스테리아균 감염의 위험을 주의해야 하며 냉동야채는 가급적 조리해서 섭취해야 함
- 특히 노인, 신생아, 임산부 등 면역력이 약한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함

2. 살충제 람다 사이할로트린(lambda-cyhalothrin)에 대한 규제 변경

- 출처 : EUR-Lex (06.07.201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31087806677&uri=CELEX:32018R0960>

-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규정 (EC) No 396/2005에 대한 부속서 II, III의 개정을 통해 식품 내 람다 사이할로트린의 최대 잔류 허용기준을 변경함
- 해당 기준은 2005년 2월 23일 규정 (EC) No 396/2005를 참고하여 도입되었으며, 람다 사이할로트린 최대잔류 허용치(MRL)는 부속서 III의 B에 명시됨
- 2015년 12월 2일 유럽식품안전청에서 기존 람다 사이할로트린 최대잔류 허용치 검토에 대한 의견 제출하였으며, 해당 평가수정 요청은 규정 (EC) No 396/2005 제 43조에 의거하였음
- 2017년 7월 26일 유럽위원회는 람다 사이할로트린 MRL의 취급을 검토하고 관련한 위원회의과 합의사항을 제출함
- 해당 제출서에는 쌀, 케일 등 곡물에 대한 MRL 위험성이 강조되고 최대 잔류 허용치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무역국 간 새로운 MRL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
- 유럽회원국 및 제 3국 식품무역사업자가 MRL 변경으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함
- 이에따라, 케일, 쌀 등을 제외한 식품 내 람다 사이할로트린 최대 잔류 허용치는 2019년 1월 26일 이전에 EU로 수입된 것에 한해 개정 전 규정된 (EC) No 396/2005을 따르기로 함
- 이 규정은 공표된 날부터 20일 째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효함
-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식품 코드	식품 명	최대 잔류허용치 (mg/kg)
0110000	감귤류	0.2
0120000	트리너츠(Tree nuts)	0.01
0130010	사과	0.08
0130020	배	0.08
0130030	마르멜로(Quinces)	0.2
0140010	살구	0.15
0140020	체리	0.3
0140030	복숭아	0.15
0140040	자두	0.2
0151010	포도(Table grapes)	0.08
0151020	와인포도	0.2
0154010	블루베리	0.2
0154020	크랜베리	0.2
0161030	올리브	1
0161060	감	0.09
0162010	키위	0.05
0162020	리치(lychees)	0.01
0163010	아보카도	0.01
0163020	바나나	0.15
0163030	망고	0.2
0163040	파파야	0.01
0163070	구아바	0.01
0211000	감자	0.01
0213020	당근	0.04
0213080	무	0.15
0231010	토마토	0.07
0231020	후추	0.1
0231030	가지	0.3
0232010	오이	0.05
0234000	사탕옥수수	0.05
0243010	양배추	0.3
0243020	케일	0.01
0244000	콜라비	0.01
0251020	상추	0.15
0251060	루꼴라	0.7
0252010	시금치	0.6
0260010	콩	0.4
0260030	완두콩	0.2
0260050	렌틸콩	0.2
0270010	아스파라거스	0.02
0401020	피넛, 땅콩	0.2
0401050	해바라기씨	0.01
0401070	대두,콩	0.01
0500030	옥수수	0.02
0500060	쌀	0.01

3. 특정 사료 및 식품에 관한 규정 개정

- 출처: EUR-Lex (03.07.201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31087806677&uri=CELEX:32018R0941>

-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비동물성 특정 사료 및 식품에 대한 공식 통제 수준에 관한 규정 (EC) No 882/2004를 시행하는 Regulation (EC) No 669/2009를 개정함
-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사료 및 식품법, 동물 건강 및 동물 복지 관련하여 Regulation (EC) No 882/2004를 공식 규정한 바 있음
-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해당 규정의 시행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9/2009의 부속서 I에 비동물성 사료 및 식량 수입에 관한 공식 통제 수준을 규정함
- 규정 (EC) No 669/2009은, ‘부속서 I의 목록은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검토 및 수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식품안전이사회는 최근의 식품사건·사고와 관하여, EU로 수입되는 수입 품목에 한 해 검열 및 식품정보 분석을 실행하는 한편, Regulation (EC) No 669/2009 제 15조에 의거하여 2년 단위로 수정된 목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위원회는 규정된 안전 요구사항을 이미 만족하는 항목은 향후 목차 보고서 제출에서 면제됨을 밝힘. 이와 같은 품목으로는 중국의 꽃양배추, 이집트의 딸기, 이란의 말린 포도, 케냐의 완두콩, 태국의 야드콩, 우간다의 가지 등이 있음
- 위원회는 또한 샘플링 검사, 인증 요건과 관련한 식품안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베냉의 파인애플, 터키의 레몬 및 석류에 관한 목록도 향후 안정성 검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함
- 또한 위원회는 인도산 오크라는 현재 식품안전 관련 시행규정 (EU) No

885/2014에 따라 식품 안전에 관한 검사 평가서 취득 후 EU로 반입 가능하지만, Regulation (EC) No 396/2005에 설정된 농약 최대 잔류 허용치 위반하는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 안전성이 입증되어 해당 식품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공포날부터 3일 후 효력이 발생함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없음

III 통관문제 사례·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제조사)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2017.1.1						

※ 첨부파일 참조